

9

2019

• 통권 433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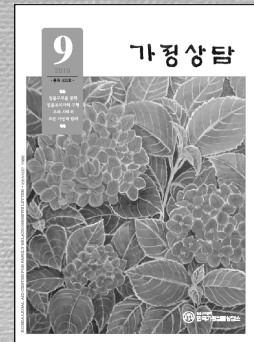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walhome>



상담소의 윤후정 이사와 곽배희 소장이
 지난 8월 23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이화여대 법과대학 70년 ·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특별공로패'와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을 수상했다. (관련 기사 31면)



지난 8월 13일 애란한가족네트워크에서
 본소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협업에 관해
 간담회를 갖고 추후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관련 기사 31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상동 수국〉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 14 • 가정폭력상담실
-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⑦
- 22 • 인터넷 상담
- 23 • 좋은 책
타인의 고통
- 24 • 결혼과 인생(199) 만화일기
우리들의 상처 _ 장차현실
- 25 • 상담소와 함께
- 26 • 현장실습 소감문
-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사회교육 사업과 법률임상실습, 법률구조 체험학습의 선구자인 상담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여름 방학 동안 상담소를 채웠던 법과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임상실습과 중고등학생들의 법률구조 체험 활동이 각 학교의 개학을 맞아 일단락되면서 상담소가 해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육 부문을 한 번 되짚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소의 구성원을 보고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해 내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담소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또는 복지회관,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뤄지는 사회교육 사업의 시초가 상담소의 목요강좌나 부부교실, 어머니학교에서 비롯된 바가 크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임상실습을 비롯한 법률구조체험 교육은 상담소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히 법률임상실습과 체험학습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법적 보호 등을 생각했던 상담소의 출발 자체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걸음을 앞서 간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1956년 문을 연 상담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때,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은 더욱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선생님은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법정대 법률학과와 당시 여성법률상담소를 자매결연의 형태로 연결하여 법률학과 4학년 학생들이 상담소에서 실습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법학공부는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여성법률상담소를 법률임상실습교육장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당시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생소하게 생각했던 법률상담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참 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임상실습은 1964년부터 2014년까지 이대 법학과 학생을 비롯해 각 대학 법학과와 사범연수원생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겼고 이와 같은 상담소의 임상실습은 오늘날까지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전문기관실무수습 그리고 각 대학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실습, 사회봉사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에는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임상실습이나 실무수습,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법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법조인의 중요한 사명을 자각’ 하게 되었으며 ‘법률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구조에 대해 바르게 이해’ 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소에서는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초중고생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으로 모의재판과 상담소 견학, 법률구조 강의 등을 실시하여 연간 두, 세 학교 씩 현재까지 1,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중등학생들은 또 그들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소박하고 진지한 소감을 남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법률가로서의 장래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듯 상담소는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의 생활화 운동, 가족법개정운동과 더불어 법률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현재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을 찾아 최선을 다해 온 상담소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상담소가 이 일을 해 온 63년의 세월 동안 어느 한 해 걱정 없던 때는 없었으나 걱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던 때도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더위를 뒤로 하고 결실을 앞둔 계절을 맞이하며 진솔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느 때처럼 아니 더욱 열심히 법률구조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이 상 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부부로서 생활하겠다고 결정한 당사자들을 법외의 영역으로 축출하고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일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즉, 부부로서의 권리의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실상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많다보니, 부득이 판례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전제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실혼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법(공무원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사실상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시대가 있었고, 또한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이 상당수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부부로서 생활하겠다고 결정한 당사자들을 법외의 영역으로 축출하고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일까? 이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나름대로 법의 영역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도

*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프랑스법령용어집」에는 「시민연대협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연대의무협약」, 「시민연대계약」, 「동거계약」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어적인 의미에서는 「시민연대협약」이라는 번역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프랑스 민법은 PACS를 「이성 또는 동성의 성인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제515-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의미는 「동거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시민연대협약」등의 용어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동거계약」이라고 지칭한다.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가족법도 가족법의 이념으로서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가족법의 다양성」도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이를테면 민법전에 혼인신고를 필요로 하는 혼인에 관한 규정 이외에 사실혼에 관하여도 명문 규정을 둬으로써,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혼인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PACS」제도를 살펴볼까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입법 당시 동성혼이 인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혼인이란 동성 또는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하여 동성혼을 프랑스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2013년임) 이를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제정 당시의 입법 목적과 달리 프랑스의 상당히 많은(열에 아홉 정도) 남녀가 혼인의 한 형태로서 선호하고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프랑스는 가족법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가족법 개정을 위임받아 가족법의 개혁을 주도한 ‘장 까르보니에’ (Jean Carbonnier)교수는 가족법 개혁의 기본원리로서 ‘자유’, ‘평등’, ‘다원주의’를 설정하였다. 즉, 프랑스 혁명의 유산을 승계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함으로써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각자의 선택과 동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족법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평등의 원리는 특히 모든 배우자 및 부모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가족의 생활 양태나 개인적인 열망도 다양성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입법자는 한 가지 형태의 가족만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 각자에게 가족의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당시 가족법의 개혁을 주도했던 까르보니에 교수는 ‘저마다 그의 가족이 있고, 저마다 그의 법이 있다’라는 특유의 원칙을 제창함으로써 특정한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개방해 놓고, 구체적으로는 개인 각자의 선택에 일임하도록 하는 가족법을 구현하였던 것이다.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가족법의 개혁을 주도했던 까르보니에 교수는 ‘저마다 그의 가족이 있고, 저마다 그의 법이 있다’라는 특유의 원칙을 제창함으로써 특정한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개방해 놓고, 구체적으로는 개인 각자의 선택에 일임하도록 하는 가족법을 구현하였던 것이다.

특·별·기·고

사실상의 동거란 이성간이나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동성 커플도 공동생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PACS를 민법에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평등·다원주의라는 가족법의 기본원리는 현재까지도 프랑스 가족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원리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도 혼인 이외에 동거계약이나 사실상의 동거 등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프랑스 민법전은 혼인(le mariage)을 비롯하여 계약에 의한 동거(pacs)와 사실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사실혼(le concubinage) 등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999년 11월 15일 PACS에 관한 조항을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할 당시에 주된 입법 목적은 동성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장치로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프랑스 법원이 판결한 판례는 프랑스 가족법의 끊임없는 개혁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법 관련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족법의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결단을 촉구하며, 종래의 판결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혼인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관계라는 기존의 관념을 계속 고집하며 오랫동안 동성간에는 동거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또한 동성혼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동거 개념을 확장하는데 전혀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은,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 삶의 배우자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관계’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혼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동성커플에 대한 사실혼 관련법의 적용을 거부한 판결이 반복되자 결국 1999년 11월 입법부가 이 판결의 내용을 깨뜨리고 사실상의 동거(le concubinage)란 이성간이나 동성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동성 커플도 공동생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PACS를 민법에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PACS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 민법 제 13장 제1절 제515-1조부터 515-7조까지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그 후 2006년 개정으로 미비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들(공시나 재산관계 등)이 보충되었으며, 최근 2016년 11월 18일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종래 PACS 신고서를 공동거주지의 관할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공동거주지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2017년 1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2016년에 단행된 프랑스 민법 개정의 출발은 사실상 가족법상의 개혁이 아니라 '21세기 사법절차의 현대화'라는 목적 하에 추진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법절차의 간략화와 간이화라는 입법목적 하에 이혼제도 등이 개혁을 맞게 되는데, 이를테면 '판사 없는 이혼' 등이 도입되는 전기를 맞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상호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라도 판사의 확인(협의이혼의 신고와 협의서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그 기간이 평균 3.5개월 정도 걸리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폐단이 야기되자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는 생략되고 오직 변호사 입회하에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각각 서명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도록 이혼절차가 훨씬 간략하게 되었으며, 15일 정도의 숙려기간 만

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종료될 수 있게 되었다(간략함, 안전함, 신속함의 추구). 이와 같은 맥락에서 PACS의 경우도 종래 관할 법원에 공동으로 신고하던 것을 이제는 공동거주지의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간편화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PACS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종래 법원의 서기로부터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로 이관되었다.

동성 또는 이성의 성년자 2인이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인 PACS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PACS의 주체는 성년자로서 성년자만 동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동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피후견성년자는 후견판사나 친족회의 허가가 있어야 동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동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명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친자 사이의 동거계약도 금지되는데,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의 동거계약은 무효가 되며, 동거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이거나 이미 동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뒤의 동거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거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 합의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성 또는 이성의 성년자 2인이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인 PACS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거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 합의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기·고

PACS는 혼인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재산적 효과만 인정된다.

특별한 유언 사항이 없으면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친생자 추정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의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 등에 의하여 체결된 동거계약도 무효가 된다.

동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의사가 표시된 협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증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협의서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을 영위할 공동거소와 경제적인 부양 및 PACS 재산제를 규정한 계약서의 실질적 공동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두 당사자는 동거계약 신고서를 공동거주지(공동거주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거주지) 관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등록하고 공시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동거계약의 합의가 공증인을 통한 공증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이 등록절차와 공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동거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역시 등록을 위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이나 처음에 공증증서를 수령했던 공

증인에게 제출한다. 신고된 동거계약은 당사자 각각의 출생증명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원과 함께 기재가 되며, 동거계약의 효력발생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공시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ACS는 혼인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재산적 효과만 인정된다. 혼인한 부부 간에는 배우자의 성(姓)을 자기 성에 추가하거나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동거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는 성이 변경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거주권 취득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단기 체류증의 발급에 관해서만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동거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특별한 유언 사항이 없으면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의인자나 친자관계존부확인 소 등을 통하여 친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는 독신의 지위에서 입양이 허용되지만(두 당사자의 공동 입양은 불가능함), 혼인과 달리 상대방에게는 입양이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동거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첫째 동거의무를 들 수 있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공동거주지의 호적담당공무원에게 PACS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양과 상호부조의무가 인정된다. 1999년 입법당시에는 PACS에 의한 당사자의 의무를 상호 물질적인 협조의무에 한정하였지만, 2006년 민법 개정으로 상호부조의무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해서 혼인한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효과로서 성실의무 존중의무 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 사이와 동일하게 서로 간에 성실의무 등이 인정된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상호 간에 물질적인 협조의무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협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일상가사 비용의 금액이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 및 재산의 공동 부분에 관한 결정 등의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경제적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동거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만, 명백하게 과도한 지출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PACS에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동거계약상의 연대책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교육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서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재산제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의 법정 재산제는 별산제가 된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PACS 체결 전에 취득한 각자의 고유재산을 관리·수익·처분할 권한을 보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해서 혼인한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효과로서 성실의무 존중의무 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 사이와 동일하게 서로 간에 성실의무 등이 인정된다.

특·별·기·고

PACS는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해지 또는 합의해지,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혼인이라는 3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종료된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혼인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동거계약은 종료한다.

유한다. 동거계약 기간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단독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동거계약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취득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며 각자 2분의 1 지분이 인정된다. 동거계약 체결 전이나 기간 중에 각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도 각자가 부담한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할 때 공유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취득한 재산은 두 당사자의 공유로 되며, 지분은 1/2로 간주되고 재산취득에 대한 기여가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분을 다룰 수는 없다. 물론 동거계약 체결 전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된다. 이 공유 합의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거계약이 종료할 때 소멸된다.

PACS는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해지 또는 합의해지,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혼인이라는 3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종료된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혼인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동거계약은 종료한다. 이제는 법원의 서기가 아니라 호적담당공무원이나 등록절차를 진행한 공증인이 혼인이나 사망사실을 통지받으면

동거계약의 종료를 등록하고 공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 쌍방이 혼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적용되던 재산제를 혼인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동거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혼인한 경우에도 PACS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이혼과 동일하게 PACS도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동거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PACS를 해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동거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결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그 통지 사본을 동거계약을 신고했던 호적담당 공무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거계약의 종료를 통지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등록하고 공시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등록한 날부터 종로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절차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PACS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방적 해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약정할 수 없다. 동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해소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신고한 공동거주지 관할의 호적담당공무원이나 등록절차를 진행한 공증인에게 PACS를 종

프랑스 민법상의 PACS(동거계약)

료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역시 그 효력은 담당공무원이 이를 등록한 날에 발생한다.

동거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일단 동거 의무를 비롯하여 부양 및 상호부조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재산의 청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거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경우는 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부부재산관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동거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스스로 청산할 수 있으며, 재산의 청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배타적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각 당사자에게 해당 재산의 1/2 권리가 인정된다.

PACS의 일방적 해소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민법전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방 당사자는 스스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PACS의 해소가 남용되거나 폭력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민법상의 PACS는 계약 내용의 명료함과 당사자 권리의무의 간결함뿐만 아니라 이혼절차의 번잡함과 까다로운 절차 및 경제적 부담에 비하여 간략한 해소 절차 등으로 인하여 1999년 입법 당시의 동성커플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과 달리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혼인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 프랑스에서 연구년으로 1년 동안 생활할 때 한인여성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다시 기억난다.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이 프랑스 남성과 사귀게 되어 그들로부터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을 때, 그 프랑스 남성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란 바로 이 PACS인데 반하여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당연히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결혼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그 후 혼인의 실체를 알게 된 한국 여성들의 이 낯선 제도에 대한 당혹감과 곤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함께 마시고 먹고 잠자는 것이야말로 혼인의 본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도 가족법의 다양성을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이 프랑스 남성과 사귀게 되어 그들로부터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을 때, 그 프랑스 남성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란 바로 이 PACS인데 반하여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당연히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결혼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그 후 혼인의 실체를 알게 된 한국 여성들의 이 낯선 제도에 대한 당혹감과 곤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무조건 참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익혀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4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2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8. 3. 23. ~ 2018. 10. 1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혼인한지 3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36세, 33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7년 10월 사건당 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제사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다가 술을 마셨으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를 손으로 들었다 놔다 한 후, 주변에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아들 집에 거주하며 별거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고 아들 역시 매사 다투면서 무슨 화해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아들과도 통화하지 않고 지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평소 갈등원인으로 성격차이를, 본 사건의 발생원인으로 피해자의 가사불성실을 꼽았다. 행위자는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가 강하였는데, 상담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졌고 자신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도 반성하였다. 피해자는 장성한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면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약속과 실천을 전제로 재결합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도 술 마시고 행패 부리지 않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재결합할 의사가 강하였고, 1년여 기간 동안 별거하면서 가사에도 익숙해졌으므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각자 편하게 지내고,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말 한 대로만 지키면 걱정이 없겠고, 나아가 술을 마시는 것도 좋은데 주사와 습관적인 과거사 거론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를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2018년 11월 초에 집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약속을 어

길 경우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상담자는 행위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할 수 있음을 부부에게 설명하였다. 부부는 화해하고 재결합하였다(그런데, 2019년 7월 피해자는 재결합 후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하였다면서 이혼상담을 하였고, 상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3회, 집단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9회, 전화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3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4회, 자녀 미술심리치료 3회 등
총 35회 실시

상담기간

남편 : 2018. 3. 22. ~ 2018. 9. 21.
아내 : 2018. 6. 4. ~ 2018. 12. 3.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9세, 5세)가 있다. 부부는 2017년 11월 사건당일, 주거지에서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핥고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바로 상담에 임하였으나, 아내는 보호처분결정에 항고하여 기각결정이 난 후에야 상담에 임하여 부부의 상담개시일과 종결일이 다르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가 고소득을 위하여 자영업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가부장적 인식의 한계가 있었다.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남편이 가족에 대한 친밀감 내지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상담에 임하지 않았지만, 항고기각 결정 이후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부부는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상담후반기에 함께 부부집단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자녀도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부부집단상담은 8회기로 진행되었는데 남편은 상담 종결일이 되어 4회기 참석 후 상담을 종결하였고, 아내는 남편의 상담 종결 후 혼자 3회기를 참석한 후 다시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기간 중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이전에 비하여 부부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서로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변화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편은 음주와 흡연을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며 아내의 개선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아내는 자신이 기대수준을 낮추어 외면적으로 부부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부 모두 폭력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개선되어 폭력 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과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이 높은 점이 강점으로 향후 부부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2017버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9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등 총 12회 실시

상담기간

2018. 5. 2. ~ 2018. 11. 21.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혼인한지 7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6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7년 4월 사건당일, 감기 증세가 있는 아들에게 스테로이드제가 든 약을 처방받아 먹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에 임하지 않아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기간연장과 추가로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 변경결정 이후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한의사로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으로 상담에 오지 못하였는데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상담에 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으로 3번 신고 되었으며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피해자와의 갈등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은 대화법을 잘 몰랐던 점이고, 피해자의 문제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주위에 도움을 받을 지인이 없었고, 행위자도 결혼부터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처지였던 점이 부부생활의 갈등요인이 되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행위자의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휴무일인 평일 주간에 개별상담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신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표정 관리에 대하여 인지하고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가는 등 배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표정에 대하여도 신경을 쓰고 배려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갈등이 인격 차이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과 사회성 등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면서 이대로만 유지되어도 좋겠다고 하였고,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피해자와는 여러 차례 상담약속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의 욕구 및 행위자의 변화 여부 등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 2017H4** 폭행치상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5. 9. ~ 2018. 11. 26.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1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7년 12월 사건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플라스틱 서랍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평소 피해자로 부터 음주문제를 지적받아왔는데, 자기주장이 강한 피해자가 행위자를 이기려고 하는 점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부부는 다툼 때마다 욕설을 하여 자존감이 손상되는 경험을 반복한 결과 냉담한 관계가 지속되어왔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곧 별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상담은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기대는 없다고 하였지만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중간 평가 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줄였으며, 감정조절이나 대화법 등에서 노력하는 변화를 인정하였다.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였고 모자라는 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행위자 뿐 아니라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등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행위자는 아무런 기대 없이 상담에 임하

였고 생업에 대한 부담감이 주간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야간의 집단상담은 생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좋았고 집단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문제점을 너무 크게 보았음을 알게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만족하면서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 지금은 8점으로 평가하였다.

종결 상담 시에도 행위자와 피해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폭력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13회 등 총 17회 실시

상담기간

2018. 5. 14. ~ 2018. 11. 1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1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017년 12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종업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비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폭력을 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첫 상담부터 종결상담까지 매회 같이 상담에 임하였으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한가한 날 오전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부는 상호 신뢰하지만, 음식점 운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이 갈등원인으로 영향을 미쳐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부는 사건 이후 서로 반성하고 양보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중간 평가 시 현재의 부부관계를 행위자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아내는 7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모자라는 2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를 어떻게 전환하고 해소할 것인지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행위가 '화'를 잘 조절해주기를 바랐다. 이에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코칭을 하였고 남은 상담기간에 이를 심화하여 진행하였다.

상담 종결 시, 피해자는 무작정 참았던 전과 달리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그때그때 행위자에게 표현하면서 욕구를 적절히 해소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부부 모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하였으며 유지를 위한 향후 노력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5**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1. ~ 2018. 11. 2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11세, 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2월 사건당일, 술에 취하여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갈등원인으로 행위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꼽았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스스로 단주를 실천하겠다고 이행과제를 수립하였고 상담기간 중 이를 실천하였다. 한편, 행위자는 피해자의 자녀교육방법과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종결 평가 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단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단주 약속을 이행하였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며 자존감을 회복하였고, 일찍 귀가하여 피해자 및 자녀들과 친밀감을 쌓으며 신뢰를 회복하였다. 술로 인한 문제가 없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거의 수용해주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으며, 모자라는 1점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집단상담 8회,
음주문제상담 3회, 교육강좌 5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1. ~ 2018. 11. 29.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26년간 사실혼 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피해자는 음식조리를, 행위자는 서빙과 배달을 하며 피해자 부재 시에는 조리도 하였다. 피해자는 가정과 가게의 경제를 관리하며 행위자에게 하루에 1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는데 돈을

더 달라는 행위자와 다툼이 잦았다. 행위자는 2017년 11월 사건당일,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구체적인 상담 목표는 없다고 하는 등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지만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더 요구하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는 회복되었다. 다만, 행위자는 사는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며 노후를 불안해하였다.

중간 평가 결과, 행위자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1~2회였던 음주횟수를 한 달에 1회로 줄임으로써 건강도 좋아졌고 피해자의 신뢰도 회복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요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충돌하지 않았으며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3점, 지금은 5점으로 평가하였다. 자신의 변화된 점으로 짜증이 나도 이해하고 노력하는 점을 꼽았으며, 모자라는 5점을 더 채우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더 많이 하여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자제하기 바랐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8회, 음주문제상담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4. ~ 2018. 11. 30.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26세, 21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 거실 소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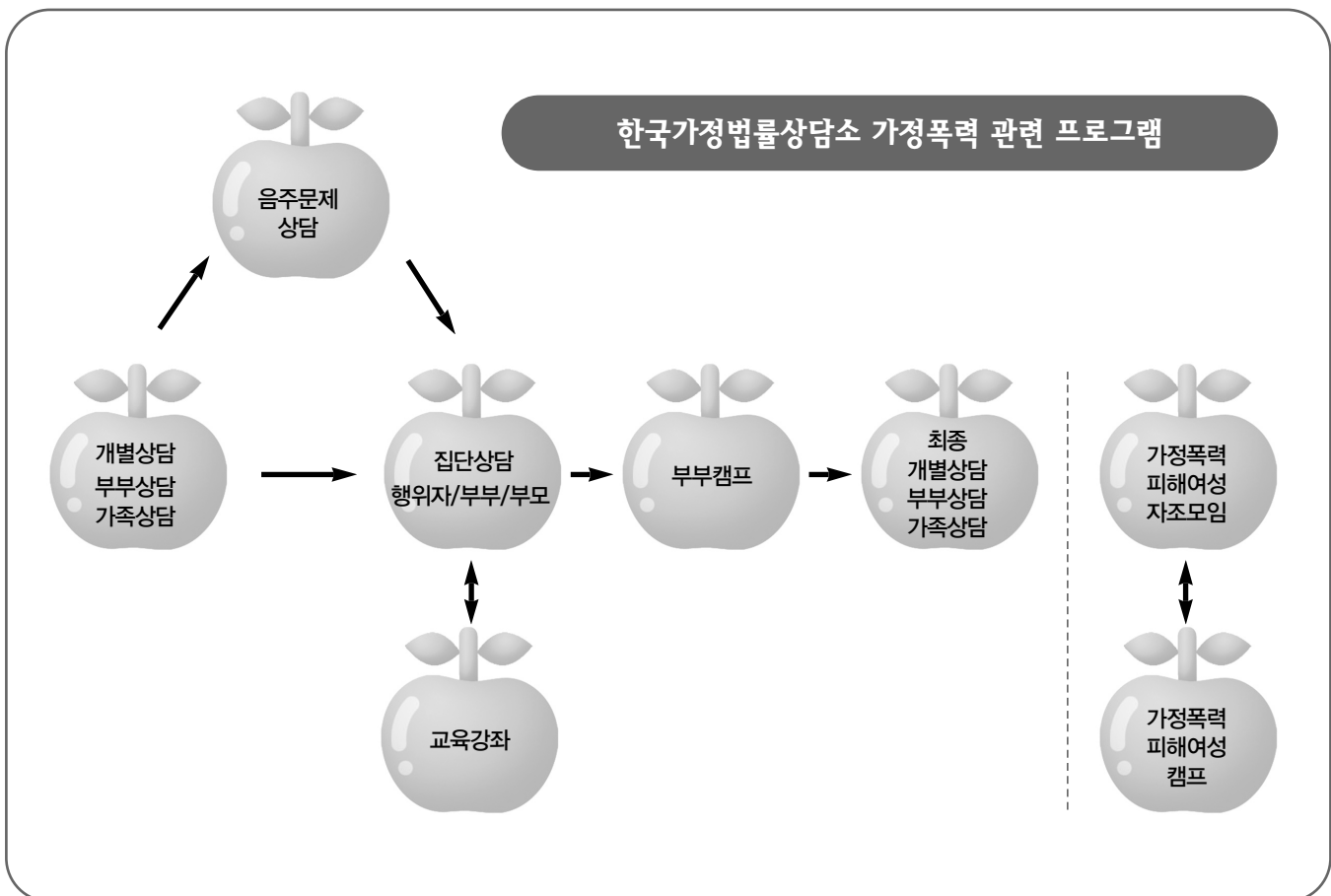
피해자는 본 사건 발생 이전인 2015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본소를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하였고 상담 결과 본소에서는 행위자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어 무료 소송구조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장 작성 등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는 본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의사가 확고하였는데, 행위자의 변화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사과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을 인정하였고,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있었지만 딸의 만류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행위자는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피해자의 청구대로 이혼할 경우 이혼을 감수할 것이고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종결상담 시에도 이혼소송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행위자는 여전히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나 이혼판결이 나면 집을 나와 재산분할을 다투겠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참는 것을 배웠고,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백인변호사단

1979년 5월

백인변호사단 결성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담소의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자 소송구조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민주 인사들이 모여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전원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태영 소장과 부군 정일형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장은 이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당하고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제한받기에 이르렀다.

백인변호사단은 이태영 소장의 활동 제약과 법률 서비스

및 소송의 증가라는 외부적 요인이 함께 덮치면서 이러한 국면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3월 이태영 소장은 법률구조를 위한 백인변호사단 발기 취지문을 만들어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보내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법정에서의 법률구조의 필요, 즉 짐작하다시피 변호인 문제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무력하고 억울한 이웃을 방치할 수는 없겠기에 떠오른 발상이 변호사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즉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호사 한 분이 1년에 1건씩만 무료(최소한의 경비는 상담소 부담)로 변론을 맡아 주신다면 변호사 100명이면 1년에 100건의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봉사사업은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기에 최소한 변호사 100인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런 내용의 발기 취지문을 접한 변호사들은 마치 기다리거나 했다는 듯이 가입승낙서를 보내왔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청주,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 백인변호사단 가입승낙서를 보내온 변호사는 한 달도 채 안되어 140여명에 달했다. 상담소로서는 당초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으나 내심 자신감을 갖지 못한 터라 예상 밖의 열렬한 호응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상담소는 이태영 소장과 김춘봉 이사를 중심으로 ‘백인변호사단 운영세칙’을 마련하였다. “억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으며 사무집행을 위하여 임기 4년의 대표변호사 1인, 간사변호사 1인, 서기 1인을 두기로 했다.

대표변호사와 간사변호사는 백인변호사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서기는 대표변호사가 임명하기로 했다. 운영세칙에서는 백인변호사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이를 1)생활보호법이 정한 요보호자 2)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3)기타 집행회의가 구조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신청사건 중 구조를 거부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1)당해 사건이 사회정의 및 공서양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승소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상담소는 1979년 5월 1일 법의 날을 맞아 상담소 6층 강

당에서 발족식을 열고 명칭은 100명을 모집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려 백인변호사단이라 정했다. 백인변호사단의 초대 대표변호사에 김춘봉 변호사가, 간사변호사에 황산성 변호사가 선출되었고 서기에는 엄신자 상담위원이 임명되었으며, 백인변호사단 사무실은 상담소 안에 두기로 했다.

백인변호사단 발족은 힘없는 이웃의 편에 서겠다는 변호사들의 사법적 정의의 상징이고 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표시였다. 한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봉사를 약속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었다.

1979년 140명의 변호사로 시작된 백인변호사는 2019년 현재 75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인변호사단이 하는 일은 억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무료소송을 이끄는 것이다. 무료소송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실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백인변호사단은 무료소송 뿐 아니라 낮 시간의 상담 자원봉사를 비롯해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월요일 야간상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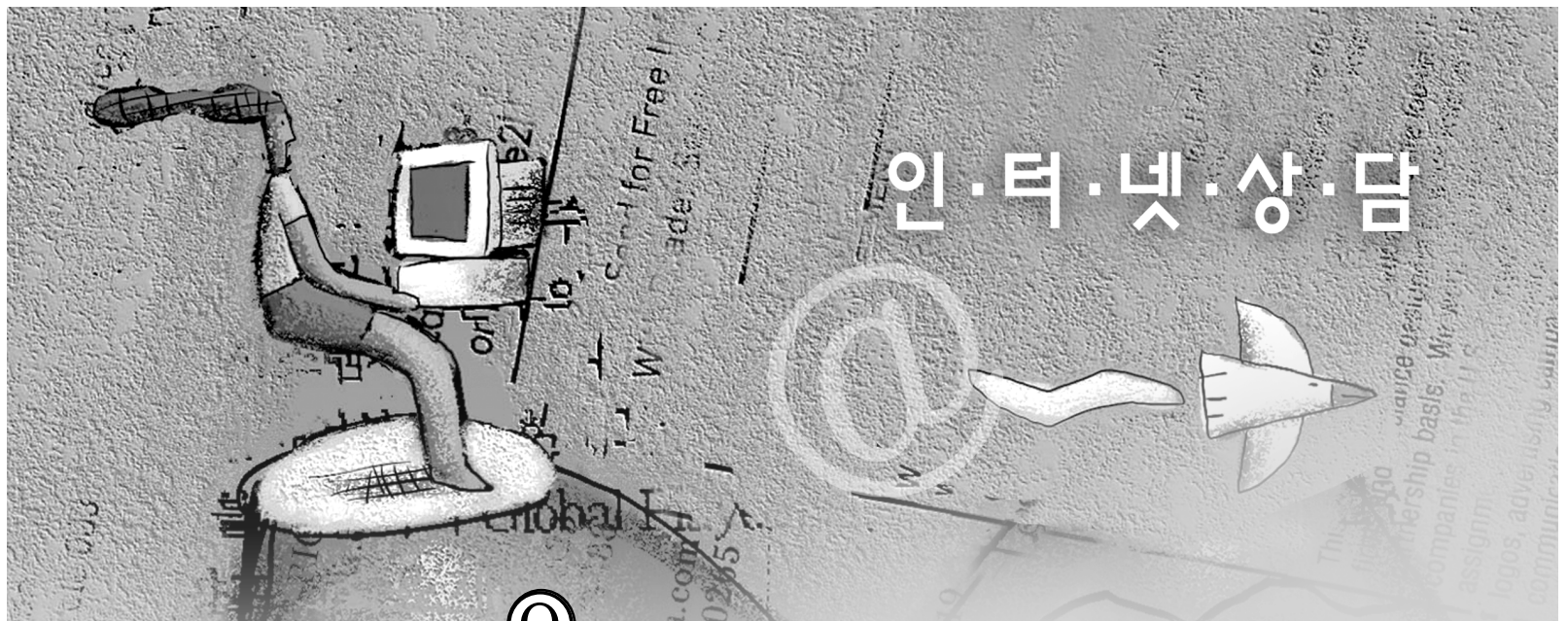
편집부



▲ 1979년 5월 1일 당시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백인변호사단 발족식



▲ 상담소 창립 60주년의 해를 맞아 2016년 3월 14일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 룸에서 가졌던 백인변호사단 모임



Q

저는 2019년 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제가 집을 나와 생활하다가 1년 여 만에 협의이혼을 한 것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남자동창의 도움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6개월 뒤 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서둘러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하고,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도 했기에 아이가 당연히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될 줄 알았는데,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부에 기재된다는 공무원의 이야기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데,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바로 기재시킬 방법이 없나요?

A

혼인 관계 종료 후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따라서 이 기간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는 그동안은 친생부인의 소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구민법 제844조 제2항)이 어머니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개선입법으로 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청구가 신설되어 2018. 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관할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그보다 좀 더 간이한 절차로 자녀의 출생신고 전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소는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남편이 피고가 되지만,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경우는 전남편이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전남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존재를 모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좋은 책



보통은 어린이 둘을 채우고 만화책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집안 일이 다 끝나지 않아 빨래를 개다 무심코 텔레비전을 켜고, 왜 인지 그날 따라 평소에 보지 않던 CNN에 채널이 멈췄고, 잠시 후 서양 사람들처럼 '오 마이 갓'을 내뱉으며 조용히 빨래를 내려놓았다. 2001년 9월 11일 밤의 일이다.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더 센터에 박히는 것을 보면서 아득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괜히 애들이 잠든 방문을 하나씩 열어 보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시사각각 기울다 마침내 가라앉은 세월호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계속 되던 수색작업도 잊을 수 없다.

이처럼 몇 가지 이미지들은 지울 수 없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된 거리에 홀로 앉아 울고 있거나 혹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어린이들의 사진이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은 이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기를 간절하게 바라곤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바 '빈곤 포르노'도 있다. 지금도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김없이 어느 한 구석에 떠 있는 후원단체들의 광고들이다. 그것이 긍정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이처럼 섬뜩한 '빈곤 포르노'라는 이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가능하면 텔레비전에 이 같은 광고가 나오면 빨리 채널을 돌리고 인터넷 구석의 광고도 얼른 닫아버리거나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러한 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고통』은 지난 2004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저명한 에세이 작가 수전 손택이 이와 같은 '이미지 소비'에 관한 비판을 담아낸 책이다.

그녀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남긴 서문의 시작이 책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전해 준다.

“현대의 삶이 지닌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들을(그 현장에서 멀리 벗어난 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셀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잔혹한 행위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작은 화면을 거치면서부터 이제는 점점 더 원가 진부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잔인하게 묘사된 폭력에 익숙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시청자들의 현실 인식이 손상될까요? 그렇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택은 이미지 과잉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해 버린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의 진부한 유흥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도 그 참상에 정통해지고, 진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비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난 수전 손택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이며 예술평론가로 특히 현대문화의 다양한 면과 성격에 대해 진지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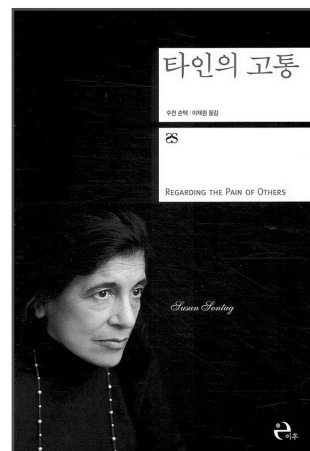
이름만 알고 있던 저자의 책을 뒤늦게 읽으면서 -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구한말 정동에 있었다던 손탁호텔을 떠올렸던 비루한 상상력이랄까 - 다른 책도 찾아 봐야겠다고 오랜만에 생각했다.

이숙현 편집부장

타인의 고통

수전 손택 지음
이재원 옮김

이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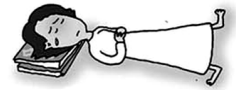


결혼과 인생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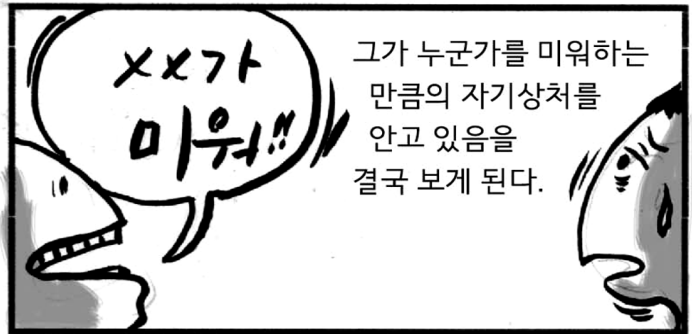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9

우리들의 상처



글 | 그림 | 장차현실



상담소와 함께



이제는 내담자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 상담소에 가고 싶다

2004년 봄 상담소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니 오래된 벽돌식 건물과 나무현판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상담소 소장님과 직원 분들의 너무나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낯설음을 모두 없애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여성법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내 엄마가, 내 아내가, 내 딸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에서 미약하지만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료 변호사님의 소개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니 벌써 16년차가 되었네요. 그 간 저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야간상담과 가끔 생활법률강의를 해왔습니다. 나름 자부심이라면 야간상담을 한 번도 핑크 내지 않고 다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위해 미리 가사법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가서 내담자 분들을 만나지만 가끔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정확히 답하기 어려워 내심 당황했던 일, 또 법적인 부분이외에 신변잡기적인 말씀만 하시는 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 상담이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상담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외의 말씀만 하시고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시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가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난 후에는 상담하는 동안도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도 제 자신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상담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장님께서 저에게 내담자들은 상담소가 자신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일 수 있기에 꼭 무언가 답을 얻기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오기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에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 듣지 않고 또 길어지면 다음 내담자들이 있어 마음이 급해져 어쩌면 정작 내담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상담은 단순히 법적인 부분만을 듣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먼저 들어 줄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담에 임하기 전 경청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려야지 다짐하고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소와 계속 인연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易地思之의 마음과 他山之石의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저의 가정사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야간상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담하는 동안 내담자의 마음도 헤아려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천정환 변호사 (백인변호사단)

현장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 및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참여 후기를 실는다.

박 현 진

동국대학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습을 신청하고 오게 되었다. 작년에 연수했던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더 알게 되었다. 법률구조연수를 통해 소장 초안도 작성해보고 피드백도 받았고, 도서실 업무,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치료결과보고서 관련 연수, 논문 자료조사 등 작년보다 더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실무적인 업무들이나 자료 정리 같은 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제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이 제일 안타까웠다. 아직은 더 공부하고 배우야함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법조 관련 진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인연은 내 부족함을 알게 해주고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이 되는데도 자극이 되기에 정말 감사하다.

한 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도 실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었다. 실습 업무 중 하나인 전화 상담 안내는 목소리만으로 누군가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다. 내담자들은 간단한 이혼 절차라며 상담하려 하였지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 그 밖의 다른 부서의 일들도 도우면서 많은 상담사례들을 접하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공부하게 되었다. 봉사를 마친 지금, 법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제대로 알지 않으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구나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공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임을 크게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감을 알았고, 나 스스로 계속 배우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주 기간 동안 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되어 좋았다.

오 창 호

동국대학교

송 혜 영

동국대학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 중 하나로 비혼모 캠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

현장실습을 한 후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때문 안타깝기도 했고 때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을 몰라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실기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법이 가지는 한

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법이 가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별개로 권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한 많다는 것을 많은 상담전화를 받으며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도 요건이 까다롭고 한시적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법상식과 법의 괴리가 어떻게 보면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이혼이 가능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나 친자식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문의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괴리된 부분은 국민들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하거나 법을 국민의 법 감정 내지 상식에 맞추어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그 간극을 해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정 희 원

동국대학교

처음에는 상당히 설레고 동시에 무섭기도 했다. 매일 상담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이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가겠다는 열정어린 다짐과 잘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시작하였다.

현장실습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담자의 사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상담소에서는 소장, 답변서, 진술서 등을 작성해보라며 자료를 주시기도 하였고, 회의 전 실제 사례를 주시며 사례에 대한 답을 찾아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2년 넘게 법학을 공부해왔지만 막상 이러한 일을 맡게 되면 단숨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소장, 답변서 등의 작성도 처음이었기에 막막했다. 그 이외에도 처음이기에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혼자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배님들과 동기 그리고 타 학교의 실습생들이 있기에 문제해결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모두 실습생이었기에 서툴렀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논의해보고 서로 종이에 써가며 이해하고자 애쓰다보니 낯설던 사건의 개요나 서류작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해나갈 수 있었다. 누가 어떤 일을 받아 업무를 맡든지 그 과정에는 모든 실습생들이 참여하였다. 결국은 서류작성이든 어려운 사례 이해든 해결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실습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 전공 관련 실무,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치보다도 얼마나 어려운 이들이 많은 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매 시간 괴로워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차마 매뉴얼대로 간단한 안내만 드리고 전화를 끊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슬이슬한 상태의 사람들도 많았다. 일이 힘들기 보다는 그런 분들의 아픈 사연들을 듣는 것에 대한 감정 소모가 더 심했던 것 같다. 정말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안타깝고 극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내 전공인 “법”이 얼마나 큰 도움과 위안이 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인 법학을 살린 진로를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어릴 것 꿈이었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라는 것이 설정한다고 하여 그대로 이뤄질지는 사실 확신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 다 한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을 오기 전, 실무적인 법률 활동으로 내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 학교 이외에 실습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 구조 실습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론만 배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가족법 분야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구조’라는 단어는 이론공부를 통해 지쳐있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때에 가뭇의 단비같이 다가왔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출근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첫 날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비록 맡은 업무는 전화 안내였고,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했지만 급박하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시는 많은 분과 벼랑 끝 상황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작은 업무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책상에 놓인 가족법 상식과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렸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고맙다하시며 도움이 되었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법률구조의 중요성이 크게 와 닿았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도서관 업무를 맡았을 때, 가정과 관련한 법률의 의안을 검색하고 요약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의안을 직접보고 요약을 해보니, 상식적인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한 소장도 직접 작성을 해보았다. 소장의 작성은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해보기 어려운 업무였지만, 실습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하기 힘든 경험도 해보았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실습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러한 업무들은 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전문직이고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도 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유 리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에 오기 전에는 거리도 멀어 너무 막막했고 한 달이 언제 지나갈까 싶었다. 신청을 잘 한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끝날 때쯤 되돌아보니 정말 실습 신청을 잘 한 것 같다. 실습을 하면서 주로 한 업무는 전화 상담안내업무이다. 전화를 받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배울 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전공과 관련되어 예를 들어 이혼과 관련된 서류들을 숙지하고 묻는 이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뿌듯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화내용이 있었다. 하나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는데, 두 달 전, 자신의 자식이 친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속상한 것을 장시간 토로하셨는데 마지막에 “들어줄 곳이 없어서 정말 답답했는데 긴 시간동안 속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큰 보람을 느꼈다. 일을 하면서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하는 점을 깨달았다. 두 번째 전화 또한 답답함을 토로 하시면서 “커피를 사주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내담자가 말씀했는데, 나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하듯이 생각했었다. 이를 계기로 작은 것도 소중이 여기며 감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감정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은 부정적인 감정 또한 중요하고 표현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장실습을 마치면서 보니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상담소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해야 배울 점이 많을까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끝날 때쯤에는 이혼 소장의 진술서 초안을 작성해 보았다. 이는 정말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글을 쓴다는 것과 이혼소송 과정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진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선생님의 첨삭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실습을 마치며 아쉽지만 깨달은 점도 많아서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한다.

김 정 언

동국대학교

지금까지 방학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방학은 저를 지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게으르지 않고 규칙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지난 학기 동안 전공 공부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되어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한 달을 보내도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보낸 시간만큼 배울 것이 많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일하는 방법과 전공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내담자들과 간단하게나마 전화로 상담안내를 했던 경험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법률과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만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담자들의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에 대해 공감할 줄 알고 감정이입을 쉽게 하는 제 성격 탓에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우고, 결과적으로 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사는 세상의 바깥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깝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힘이 없고, 불의를 참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힘이 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습이 끝나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따뜻하고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러한 경험이 풍성해지게 해준 선생님들께도 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지 은

동국대학교

2019년 7월 23일부터 약 4주간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이 마무리 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2번째 실습을 나온 만큼 저번 실습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시작하였다.

상담소 실습기간동안 가장 많이 한 업무는 전화 상담 안내 업무였다. 나는 지난번 실습 때까지 합쳐 총 280건의 전화 상담안내를 했다. 많은 전화상담의 안내를 하면서 지난번 실습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상담소의 법률구조 안내와 상담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어서 스스로 뿌듯했으며 내가 또 한 번 성장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다. 물론 아직 어설픔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고 실망하기 보다는 내가 성장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담소 실습기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상대방의 이혼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신 내담자 분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린 일이다. 지난번 실습 때는 소장 작성 실습을 통해 법률구조 연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진술서 작성을 실습하였다. 나는 내담자의 진술을 들으며 진술서 초안을 작성 했고 선생님의 첨삭지도를 받았다. 상담도 참 관하였다. 직접 본 내담자는 많이 아쉬웠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였다. 상담 참관을 통해 그 분의 사연을 들으며 나는 그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으며 최선을 다

해 진술서 초안을 작성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낯설기도 하였고 내가 도움을 드리는 일이기에 책임감도 따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도움을 드리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하였다. 선생님께서 진술서 최종본을 내담자에게 주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던 내담자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께 도움을 드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뜻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 같다. 이번 실습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다. 배움의 기회는 쉽게 찾아오기 힘든 것인데 두 번의 실습 기회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더욱 깊고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모든 선생님들께 많이 감사드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며 쌓은 경험들로 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배움의 기회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최 유 림

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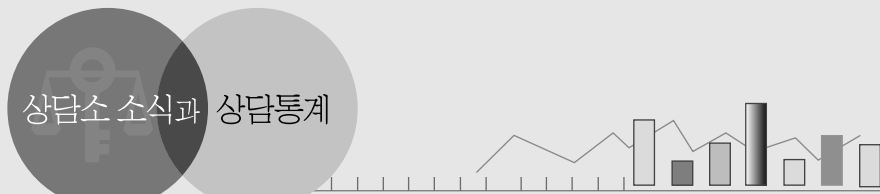
지난 학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현장실습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안내와 도서실 업무보조만 했던 자원봉사와 달리, 현장실습을 통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후견인제도에 대한 교육도 수강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 시연(법률구조체험교육), 가정폭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지교실 프로그램, 그리고 비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기랑 엄마랑 행복캠프 프로그램의 진행 보조로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아기랑 엄마랑 행복캠프”는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간 중 비혼의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업무를 하면서 어머니라는 위대함과 함께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의뢰서나 진술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보고 이에 대한 침착지도를 받으면서 법조인의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경험해보면서 가족법과 소송절차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었고 저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저에게 뜻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상담 참관이었습니다. 상담참관은 현장실습 동안 3회 정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녀이신 내담자분과 했던 상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접수실에서 상담실까지 안내하는 동안 내담자께서는 불안한 기색이 계속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내담자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고 며칠 전에 경찰에 신고한 날, 어머니께서 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께서는 내담자분을 포함한 자녀들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본인이 이를 방어할 때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담자분께서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하시나? 그러면 안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상담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담위원께서는 침착하게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내담자의 정당방위에 대해, 내담자의 아버지께 대한 폭력이 오히려 이혼 소송 진행에 있어 내담자의 어머니께서 불리한 합의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등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들은 법률적인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이것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다른 가정폭력상담소와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법과 제도의 필요성, 법조인의 자질 등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상담소 윤후정 이사, 이화여대 법과대학 70년 ·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공로패 수상 곽배희 소장은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 수상

상담소의 윤후정 이사과 곽배희 소장이 지난 8월 23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이화여대 법과대학 70년 ·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공로패’와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1950년 이화여대 법학과가 창설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날 행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역할을 다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 법조인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성장한 이화여대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을 기하자는 자축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특별공로패’를 수상한 본소 윤후정 이사는 교수, 학장, 총장, 이사장을 역임하며 이화여대 법학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법학교육은 물론 여성교육에 매진하였고 현재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그 기초를 닦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상담소의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1965년 이화여대 법정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기독교 방송국을 거쳐 1973년부터 본소에 몸담아 상담위원을 거쳐 소장 직을 수행하면서 동성

동본금혼 철폐와 호주제 폐지, 이혼제도 개선 등의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 한국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법률구조 사업에 헌신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을 수상하였다.

상담소는 창설자 이태영 전 소장이 1963년 이화여대 법정대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대 법학과와 상담소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학과 학생들에게 법률임상실습을 실시하면서 각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임상실습은 이대 법학과로써는 시대를 앞선 법학교육을 펼치는 계기가 되어 이화여대 법학과 70년 역사를 빛내는 여러 성과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상담소의 입장에서 이화여대 법학과에서 시작한 법률임상실습을 기초로 오늘날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실무수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담소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뜻을 깊이 새겨 법률임상실습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관련사진 2면)

애란한가족네트워크와 간담회

지난 8월 13일 본소에서는 애란한가족네트워크 강영실 대표원장과 고아영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등의 협업에 관해 간담회를 갖고 추후 양 기관간의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관련사진 2면)

희망가족폭력상담센터, 본소 방문하여 법률구조 체험교육

8월 21일 희망가족폭력상담센터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25명)이 법률구조 체험교육을 위해 본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한 후 천다라 상담위원의 강의로 본소의 법률구



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내부변호사회의

8월 28일 상담소 내부변호사회의가 있었다. 박배희 소장 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

2019년 8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258				
법률상담 (5,928)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순회
1,216	4,547	155	5	5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04	77	49		

* 인터넷 정보 이용 54,415건

2019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25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928건(94.7%), 화해조정 20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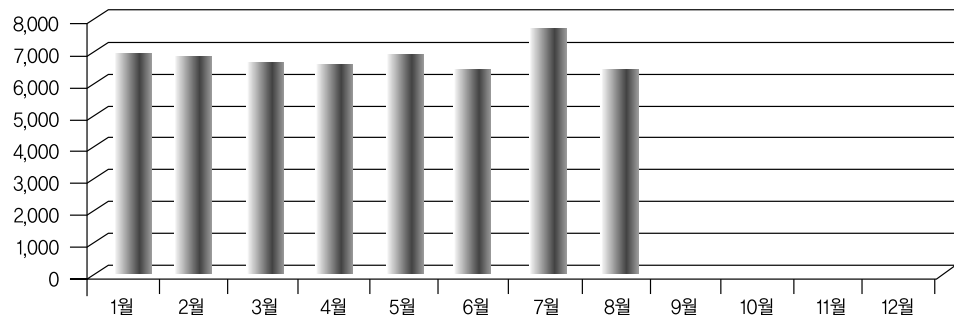
(3.3%), 소장 등 서류작성 77건(1.2%), 소송구조 49건(0.8%)이었다.

법률상담 5,92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7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양육비(7.7%→7.8%), 면접교섭권(2.6%→3.2%), 친생부인(1.2%→1.6%), 친생자존부(2.7%→4.0%), 입양(1.3%→1.5%), 혼인무효·취소(0.7%→1.1%), 이혼무효·취소(0.3%→0.4%), 유언·상속(6.2%→6.7%), 가족관계등록부(4.2%→4.6%), 친양자(0.9%→1.1%), 개명

(0.7%→0.8%), 성변경(1.0%→1.4%), 미성년후견(0.4%→0.5%), 성년후견(2.6%→3.0%), 가사절차(6.6%→9.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절차(0.1%→0.2%), 민사기타(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92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16건(20.5%), 전화상담 4,547건(76.7%), 인터넷상담 155건(2.6%), 서신상담 5건(0.1%), 순회상담 5건(0.1%)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8.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8.8. 한부모가족법교육(4) - 애란원
- 유혜경/권지연 상담위원
- 8.21. 비혼임신출산상담 관련 법과 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조은경 상담위원
- 8.21.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 8.21. 법률구조체험교육(5)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원양성기관)
- 천다라 상담위원
- 8.27.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8.28. 이혼전후 상담 법률교육-여수시가족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 8.29. 사각지대 위기임신출산지원사업사례발표회
- 조은경 상담위원

대학생 현장실습

- 이화여대
이유림, 이현학
- 동국대
김민재, 박현진, 송혜영, 오창호, 정희원, 최다한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30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여하였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강종협, 김태주, 박수열, 오현희, 윤원섭, 이현정, 이혜민, 이효재, 임방글, 조진형,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진아,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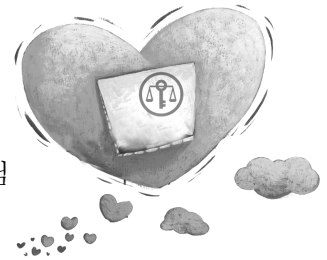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준성, 김하영, 노규림, 이민주, 이원정, 조예림, 홍채은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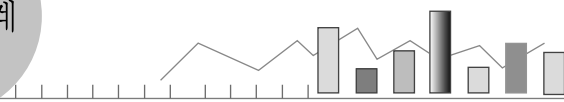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2019 강릉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가정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심재범, 조영삼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8월 6일, 13일, 20일, 27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 2건, 부모양육안내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신흥섭, 유수연, 박성미, 최정원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출장상담 60건, 가사조정 11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22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조미현, 상무균, 윤용원, 김중기, 김진원, 이상은, 김주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6회, 광주지법원에서 3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 내소 3회를 실시하였다. 공영서, 김승구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허정택, 이혜민, 임상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8월 8일 자원상담가 교육생들이 인천가정법원을 견학하였다.

익산지부

8월 1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8월 6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 4회 및 가사조정 1회를 실시하였다. 박형운, 박일지, 이보향, 송진희, 문승현, 이진, 한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8월 19일 하반기 본 상담소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27일 약수역 내에서 가정폭력예방활동 및 상담소 홍보를 실시하였다. 박수열, 이동진, 홍지혜, 김영옥, 박은정, 이효재, 황은하, 여지은, 김형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8월 20일,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재영, 남상업, 오유경, 고정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9년 7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72	165	3	2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07	93	112		2
군산 (063) 442-1560	180	149	27	1	3
대구 (053) 745-4501	1055	927	119		9
대전 (042) 520-5258	198	197		1	
동해 (033) 535-0188	127	127			
목포 (061) 273-2514	165	162	1		2
부천 (032) 667-2314	403	350	53		
성남 (031) 707-6661	420	339	73	2	6
송도 (032) 834-1369	330	177	127	6	20
수원 (031) 243-4600	466	332	120	3	11
순천 (061) 753-9910	192	182	7		3
안동 (054) 856-4200	182	170	12		
울산 (052) 246-9568	162	137	15	2	8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99	295			4
인천 (032) 865-1120	376	111	259	1	5
전주 (063) 244-2930	202	197		1	4
청음 (063) 535-3705	146	146			
제천 (043) 644-5690	139	134	2		3
충구 (02) 2238-6554	354	354			
진주 (055) 746-7975	178	121	53		4
창원·마산 (055) 261-0280	322	311	8		3
창주 (043) 257-0088	190	155	24	11	
춘천 (033) 257-4688	240	240			
태백 (033) 554-4004	104	104			
평택·안성 (031) 611-4251	241	214	22	5	
포항 (054) 283-7555	52	52			
지부총상담	7,102	5,941	1,037	35	89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479

담당 : 김수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38세)과 상대방(남, 43세)은 2002년 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5세, 10세)을 두었으나, 2009년 11월경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전 청구인은 상대방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고, 상대방의 핸드폰 요금 등도 청구인의 명의로 수납이 되고 있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매달 2번씩 이루어지기로 한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사건본인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알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은 계모에게 양육되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보여주지 않자 답답했던 청구인은 사건본인1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여, 학교 앞에서 사건본인1을 만날 수 있었다. 사건본인1이 계모와의 불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2012년부터 데려와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으로 사건본인2 또한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19. 6. 17.)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미지급 양육비 6,000,000원을 2020. 2. 말일까지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1.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하고, 청구인은 적극 협조한다.

가. 일정: 매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4회

나. 인도방법: 상대방이 청구인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위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준다.

다. 면접교섭의 일자와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5년 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80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6세)와 피고(여, 51세)는 2001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2000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가치관 차이 및 피고의 늦은 귀가로 혼인 초반부터 잦은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2002년 가을경 피고는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15년 넘게 별거 중이다. 원고는 이미 유명무실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7.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허위의 출생신고로 등재된 자녀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로 말소

법률구조 2018-326

담당 : 차명심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남, 37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0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2013년경 사회복지사로부터 원고에게 자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먼 친척의 자녀인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이었다. 원고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여 생계비를 보조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허위 출생신고된 자녀를 말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5. 1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9-2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내용 : 원고(여, 20세)는 피고(남, 22세)와 2015년 11월경부터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가 2017년 5월경 입대하면서 연락은 더 어렵게 되었다. 2017년 2월경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은 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청구를 함과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2019. 7. 17.)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에게 2019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7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야간공사를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크게 다쳐 접합 수술을 받아야 하였다. 신청인은 더 이상 일용근로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총 100회 중 38회 동안 꾸준히 변제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청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월 상환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워크아웃이 폐지되었다. 채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해결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고민 끝에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7.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54

담당 : 전병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카메라 유통업을 하였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네 식구가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경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여러 거래처들이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의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면서 회생 불가능이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사채를 빌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잘되지 않았고, 사채이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인 부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던 신청인은 우연히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2018년경 수술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7.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9월 9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0월 10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분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 법교육

간단한 법률퀴즈를 풀면서 법률상식을 익히고,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식 함양과 가정문제예방, 법률구조사업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9월 17일 (화) 10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시민
- ▶ 장소 :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홍제천 폭포마당)

- ▶ 일시 : 2019년 9월 28일 (토) 11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시민
- ▶ 장소 : 관악 다문화가족박람회(관악구청 앞마당)

1 법 교육(가족법, 가정폭력특별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 법률퀴즈 게임
- 에코백에 '가정과 평화'를 주제로 그림그리기

2 상담소 안내 책자 배부

- 법률구조 책자 및 브로슈어 배부를 통한 상담소 홍보

3 법률상담

- 원하는 분들에게 가정법률상담 및 파산·면책 상담

4 가족법개정서명운동

- 법률복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운동으로, 제도의 설명과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음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쉽고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 9월 7일(토)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 후 원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지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의내용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분인부담액 경감, 결손처분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강의 및 상담

4 「용인 에버랜드 체험활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